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1. 3.



목 차

제1편 2021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2
1. 의 의	2
2. 운영절차	2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4
1. 조세지출 현황	4
2. 조세지출 운영성과	6
Ⅲ. 2021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8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8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9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0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16
제2편 2021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	18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9
1. 의 의	19
2. 조세지출 건의서	19
3. 조세지출 평가서	20
Ⅱ. 2021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항목 ..	21

제1편

2021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I.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의 의

- 국가재정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감면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제고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규정
 - (국세감면 한도관리)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국가재정법 §88)
 - (조세지출 성과제고)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 등 조세지출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조세특례제한법 §142)
-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세지출 기본계획 운영절차

- (기본계획 수립·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31.까지 각 부처에 통보
- (건의서·평가서 제출) 각 부처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매년 4.30.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조세특례의 신설 또는 확대가 필요한 경우, 목적·정책효과·연도별 세수효과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 건의서 제출
 -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사항 등*에 대해 조세지출의 효과 및 존치여부 등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및 의견 제출

* 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② 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특례
③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 ④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

① (예비타당성평가) 조세지출의 신설 또는 기존 조세지출의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가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

- 각 부처는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

* 필요시 해당연도 1.31.까지 추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가능

-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세법 개정 법률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② (의무심층평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중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을 평가

-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심층평가 결과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해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까지 국회에 제출

③ (임의심층평가) 의무 심층평가 대상은 아니나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제도에 대해 평가

< 임의심층평가 대상 >

-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 감면액의 지속적 증가 예상으로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항
-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했던 사항
-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부처자율평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평가한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1 조세지출 현황

□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20년 국세감면액은 53.9조원(추정), 국세감면율은 15.4% 수준

○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 국세감면율* 상승 전망

* ('17년) 13.0% ('18년) 13.0% ('19년) 13.9% ('20년 추정) 15.4% ('21년 전망) 15.9%

(단위: 조원, %)

구 분	'19년(실적)	'20년(추정)	'21년(전망)
■ 국세감면액 (A)*	49.6	53.9	56.8
■ 국세수입총액 (B)**	306.7	296.9	300.5
■ 국세감면율 [A/(A+B)]	13.9	15.4	15.9

* 국세감면액 : ('20~'21년) '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추정·전망치

** 국세수입총액 : ('19~'20년) 실적치, ('21년) 정부예산안 기준

□ (분야별 현황) '20년의 경우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68.7%를 차지

(단위: 조원, %)

구 분	'19년(실적)		'20년(추정)		'21년(전망)	
	실적	비중	추정	비중	전망	비중
■ 근로자 지원(EITC 포함)	21.5	43.5	22.2	41.2	22.8	40.1
■ 농림어업 지원	5.7	11.5	5.9	10.9	6.0	10.6
■ 중소기업 지원	2.6	5.3	2.8	5.2	2.8	4.9
■ 연구개발(R&D)	2.6	5.3	3.0	5.6	3.1	5.5
■ 투자촉진·고용지원	2.7	5.4	3.1	5.8	4.7	8.3
■ 기 타	14.4	29.0	16.9	31.3	17.4	30.6
합계	49.6	100.0	53.9	100.0	56.8	100.0

□ (수혜자별 현황) '20년 감면액 53.9조원 중 개인 감면액은 33.4조원, 기업 감면액은 20.1조원

- 개인 감면액 중 68.8%가 서민·중산층에 귀속
- 기업 감면액 중 76.9%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

(단위: 조원, %)

구분		'19년 (실적)		'20년 (추정)		'21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개인	■ 중·저소득자	22.0	69.7	23.0	68.8	23.2	68.2
	■ 고소득층	9.5	30.3	10.4	31.2	10.8	31.8
	계	31.5	100.0	33.4	100.0	34.0	100.0
기업	■ 중소기업	12.5	70.6	14.8	73.8	15.7	70.0
	■ 중견기업	0.6	3.2	0.6	3.1	0.7	3.3
	■ 상호출자제한기업	2.1	11.7	2.0	10.1	3.3	14.6
	■ 일반기업	2.5	14.5	2.6	13.0	2.7	12.1
	계	17.7	100.0	20.1	100.0	22.4	100.0
구분곤란*		0.3		0.4		0.4	
총 계		49.6		53.9		56.8	

* 비거주자 수혜 대상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 (항목별 현황) 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31개

- 금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5.2조원)

(단위: 개, 조원, %)

일몰기한	'21년	'22년	'23년 이후	일몰기한 없음	합계
■ 항목수*	86	67	1	77	231
■ 조세지출액** (비중)	5.2	8.9	0.1	33.7	47.9
	10.9	18.6	0.1	70.4	(100.0)

* '21년 부분일몰 5건(연구인력개발비 등)은 항목별 일몰을 판단하여 집계 ('21년 3건, 일몰기한 없음 2건)

** 조세지출액은 '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19년 실적금액(경과규정 제외)

2 조세지출 운영성과

① 코로나19극복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 (코로나19대응) 「조세특례제한법」 수시 개정('20.3.17, '20.4.29)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진작 유도
 - *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감면,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 (경제활력 회복)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직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확대,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 (조세지출관리)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효과 달성 등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
 - * 일몰도래 조세특례 정비율(%), 정비항목 개수/일몰도래 항목 개수
('18년) 15(13개/89개) ('19년) 24(8개/34개) ('20년) 21(11개/54개)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등 일몰 종료
 - 다만, 코로나19 위기 대응,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21년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 한도를 상회할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19년(실적)	'20년(잠정)	'21년(전망)
■ 국세감면액(A)	49.6	53.9	56.8
■ 국세수입총액(B)	306.7	296.9	300.5
■ 국세감면율[A/(A+B)]	13.9	15.4	15.9
■ 국세감면한도*	13.3	13.6	14.5

* 국세감면한도(국가재정법 §88)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②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

- (시행성과) 예비타당성·심층·자율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
 - (예비타당성평가·의무심층평가) 예비타당성평가(신규 3건), 심층평가('20년 일몰, 13건)를 실시하여 '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타당성이 일부 인정된 1건 도입
 - 심층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1건 축소, 1건 확대 및 1건 일몰연장)
 - (임의심층평가) 일몰 없이 장기간 운영되거나 국회지적 등 평가 필요성이 있는 제도(6건*)를 평가하여, '20년 세법개정안 반영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등
 - (부처자율평가) 부처의 자율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평가 의견을 '20년 세법개정안 마련 시 적극 활용*
 -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부가가치세 면제 등 자율평가 우수 사례 11건 일몰연장
- (제도개선)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사전관리 강화) 향후 예산안 국회제출 시 예타평가가 면제된 신규 조세특례 내역 및 사유를 첨부하도록 관련법령 개정('21.2월)*
 - *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내용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내역 및 사유를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5의3)
 - (평가기간 확대) 평가 수행기간을 확대(5개월→7개월)하여 연구진에게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부여

Ⅲ. 2021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① (경제여건) 수출·투자 중심 회복흐름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대외여건) 세계경제가 코로나 백신 보급, 주요국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개선되는 가운데,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

* 국제유가(\$/b, 두바이, CERA '21.3월 전망) : ('19) 64 → ('20) 42 → ('21^e) 69

- 다만, 코로나 전개 상황 및 미중 갈등 등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OECD, '21.3월)

	'19년	'20년(추정)	'21년(전망)	'22년(전망)
세 계	2.7	△3.4	5.6	4.0
G20	2.9	△3.2	6.2	4.1

- (대내여건)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 지속 전망

* '21년 성장전망(% , <전망시점>) : (정부<'20.12월>)3.2 (OECD<'21.3월>)3.3 (IMF<3월>)3.6

* 반도체 매출 증가율(% , WSTS<'20.2월>) : ('19)△12.0 ('20^{추정})+6.8 ('21^{전망})+10.9

- 다만,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고용 등 민생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가속화 예상

* ①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디지털화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시장우위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②인구감소(출생자수<사망자수),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인구리스크 본격화

② (세입여건)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부동산시장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

-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전망 등 금년 세입여건은 개선될 전망, 다만 부동산·주식시장 변동성 등 세입 측면의 불확실성도 상존

- 금년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추세 및 '20년 하반기 이후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개선 전망

- 다만, 부동산·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른 소비·수입 변화 등 세입여건 불확실성도 존재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정책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지원

정책
목표

- ① 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 ②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회복
- ③ 일자리 창출 · 혁신성장 지원

운영
방향

- (정비)
성과평가결과 반영
및 적극 정비
- (신설)
필요시 제한적 허용
- (관리)
실효성 제고 및
과다 지원 방지

- (신규 요구)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 (기존 항목)
심층평가 실시

- 성과평가의 질적
제고
- 부처별 자율평가
내실화
- 조세지출 내역
정확성 제고

조세지출
운영원칙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조세지출 성과평가
내실화

조세지출예산서 등
관리체계 개선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①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 (운영원칙)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 하되,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① (정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 추진

▪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

② (신설) 코로나 19 대응 등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

▪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하여 정책성·효과성이 평가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

*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면제 가능

③ (관리) 경제 활성화 등 정책목적 달성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기존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성 제고

▪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 및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 방지

* 100% 감면 제도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

□ (운영체계) 각 부처 자율평가 → 조세특례 소관과 심층검토 → 과장급 이상 심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실시

* 세법개정안 발표 후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안 확정

② 조세지출 성과평가 내실화

□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시행

- (예비타당성평가)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1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 평가

*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기재부)

- (심층평가) '21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8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별첨1)

□ '22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선정

- 각 부처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사항*, '22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

*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해의 전년도 8.31.까지 제출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심층평가 실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제도 개선 및 환류

- 예타·심층평가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목표달성도 분석
- 평가의 일관성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발굴 노력 지속
- 예타·심층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

별첨 1

'21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구분	평가대상	주요내용
예 타 (1건)	①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세제혜택 검토
심 층 평 가 (18건)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당기분 R&D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 4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20%(중소기업 30%)+(매출액 대비 신성장R&D 지출액 비중 × 3)
	②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면제
	③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노인·장애인·경단녀의 최초 취업 후 3년간 (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
	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신규가입자 제외)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상당액의 50%(청년·경단녀 100%) 세액공제
	⑦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0~40% 감면
	⑧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99%)
	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중고차 제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료부터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3/103)

⑪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1대당 한도 : 100만원)
⑫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해 19% 분리과세
⑬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1,000cc 미만 경형 승용(합)차 소유자가 구매한 유류의 개별소비세 환급(연 20만원 한도)
⑭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LPG)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⑮농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사용 특례,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임의)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⑯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의료비·교육비의 15%,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
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소득 종류별로 법인세 전액 또는 한도까지 비과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또는 감면,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임의)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임의)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⑱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 농협·수협중앙회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및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특례 내용이 유사하므로 1건으로 일괄 평가

별첨 2

'21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추진일정

구분	일몰기한 도래 및 기존 주요 제도	신설 제도	기타	
1월	<p style="text-align: center;">금년도 평가 준비</p> <p>- 평가팀 구성(연구진 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p>			
2월 ~ 6월	<p style="text-align: center;">심층평가 실시 (1월~)</p>	<p style="text-align: center;">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2월~)</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세특례 건의 양식 및 '22년도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안내</p> <p>* 각 부처에 지침 통보</p>	
6월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 내용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6~7월)</p>			
7월	<p style="text-align: center;">세법개정안 발표(7월 중)</p>			
8월	<p style="text-align: center;">(각부처 → 기획재정부) '22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8.31.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8월)</p>			<p style="text-align: center;">지침 개선 등 평가 개선사항 발굴 (연중)</p>
<p style="text-align: center;">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9.3.)</p>				
9월 ~ 12월	<p>'22년도 일몰기한 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검토(11월)</p>	<p>예비타당성평가 요구 및 직권 선정에 따른 '22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후보 검토(12월)</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개최(12월)</p> <p>- '22년도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선정</p>				

③ 조세지출예산서 등 관리체계 개선

- 개별세법상 감면항목의 조세지출 판단 기준 개선 검토
 - 연구용역 결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토대로 새로운 조세지출 판단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 조세지출 항목별 수혜자 귀착 통계 공개
 - 감면 규모가 크고 수혜자가 명확히 분류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수혜자 귀착 통계의 조세지출예산서 반영 검토

-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 제고
 -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조세지출 예산서의 오류 검증 강화*
 - * 국세청 실적을 재집계하여 상호대사 과정을 통해 오류 검증
 - 조세지출예산서상 전망치-실적치 오차항목 사유 분석 및 추계근거 보완 등 지속 추진

- 부처별 자율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 부처별 자율평가 등급제(우수·보통·미흡)를 도입하고 '미흡' 등급은 원칙적으로 일몰 종료 추진
 - 정부 정책방향과 연관성이 높고 내실 있게 작성된 평가서·건의서의 경우 세법개정안에 반영 추진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① 코로나19 위기 대응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회복을 위해 '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 소득공제 적용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여건을 감안하여 '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② 혁신성장 · 일자리 창출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 · 원천기술 R&D비용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 세제지원 대상 지속 조정
-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요건 완화 검토
- 친환경차 대중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제지원 지속 검토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용증대세제 등 심층평가를 거쳐 적용기한 연장, 제도개선 방안 등 검토

③ 취약계층 지원 등

-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 개선 방안 지속 검토
-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특례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검토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구, 지방이전 기업 등 감면제도의 실효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검토
- '23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개편

제2편

2021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I.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의 의

- (개념)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 (조세지출 건의서)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의 신설 또는 확대에 관한 의견을 수렴
 - (조세지출 평가서) 각 부처의 소관 조세지출의 운영성과에 대한 자율적 평가 실시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2항 및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세지출 건의서

-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세감면의 신설 또는 확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 건의서' 작성·제출
 - 감면액 300억원 미만 조세지출에 대해 조세지출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건의서 제출
 - ※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
 - 새로운 조세감면 요청 시에는 감면액 보충을 위해 기존 감면액의 축소·폐지방안 등을 함께 제출(국가재정법 §88)

3 조세지출 평가서

□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4.30일)

① (평가서 작성) 해당 연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사항(일몰기한이 없는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

* '21년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136개 항목

- 조세지출의 효과 및 존치여부(범위확대 포함) 등을 자율 평가한 후, 소관 조세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

② (평가계획서 작성) '22년 평가서 작성 예정인 사항 중 제도의 내용변경 등으로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 및 목표, 관련 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제시

* '21년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제출사항은 총 27개 항목

③ (기타사항)

- 다수 부처가 관련된 조세지출은 해당 부처에서 각각 작성

※ 소관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관부처를 지정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 부처가 평가서 작성 시 소관 조세지출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여 평가의 타당성 개선

* 기존 6개 평가항목 외에 제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

- 금년부터 부처는 평가지표에 대해 서술방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평가점수' 폐지)하고, 등급(우수·보통·미흡)제로 변경

- 금년 제출된 평가서의 충실도 등에 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조세지출 항목은 원칙적으로 세법개정안에 '일몰종료'로 반영 추진

II. '21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항목

①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21년말 일몰도래 107개* 항목)

* 1개 항목이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경우 각 부처별로 중복 계산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조특	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정거래위원회	조특	38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이연 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특	10	①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	1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교육부	조특	106	①	2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방부	조특	91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국세청	조특	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국토교통부	조특	55의2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6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7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77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85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7	③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조특	87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지구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특	105	①	3	30의2	도시철도건설용역,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6	①	4	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특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조특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조특	121의9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특	121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특	121의15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21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 위원회	조특	34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9	①	1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4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5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104의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1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조특	104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17	④	5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	④	16 23 24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21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조특	126의7	⑨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관세)
농림 축산 식품부	조특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6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	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	69	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조특	106	①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의2	①	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16	①	5,6, 9		농·어민의 용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조특	116	④	7, 11		농지은행사업 인지세 면제
	조특	121의2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조특	121의23	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	42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공제율, 공제한도)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112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21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보건 복지부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조특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산림청	조특	116	④	5,6		산림조합 조합원이 용지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인지세 면제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18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28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	3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9의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조특	104의24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9	④			환경친화적(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11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조특	118	④	3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조특	118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조특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특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2의4				금사업자와 스크램업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우정사업 본부	조특	117	④	5		우정사업본부등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중소 벤처 기업부	조특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	④	1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	1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의3 12의4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6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조특	16의3 1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조특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19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특	28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조특	29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특	46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96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96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16	①	19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부가	4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우대세율)
해양 수산부	조특	67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조특	106	①	3		어업경영 및 어업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의2	①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조특	121의25	⑦ ⑧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환경부	조특	106	①	9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특	109	①			환경친화적(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②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일몰 없는 29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근로복지증진시설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5G시설 및 R&D시설 투자)
교육부	조특	104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부가	27	③			교육·과학·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조특	104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국토교통부	조특	106	①	4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21의13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조특	141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소	18	①	3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상증	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위원회	조특	38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조특	117	④	7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획재정부	조특	20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조특	2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보건복지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
	관세	91		4,5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법인	24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소득	51	①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	51	①	2		장애인 추가공제
	상증	52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산업통상자원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안전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투자)
	조특	121의3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관세	89	①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	95	①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중소벤처기업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등 투자)
해양수산부	조특	117	①	7의2 1902		부실조합 주권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연장
행정안전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안전시설 투자)
환경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환경보전시설 투자)

3]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작성항목(27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과학기술 통신부	조특	18의3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고용 노동부	조특	29의3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조특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토 교통부	조특	9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금융 위원회	조특	86의4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조특	88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 재정부	조특	26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27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농림 축산 식품부	조특	99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106	②	9		농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83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산림청	조특	106	②	9		임업종사자가 직수입하는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8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3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63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3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조특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18	①	22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중소 벤처 기업부	조특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7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17	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해양 수산부	조특	104의30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6	②	9		어민이 직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11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